

대한소화기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支援) 운영규정

제 1조(명칭)

“대한소화기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제 2조(목적)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해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자의 선발과 지원활동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지원대상 학회)

해외에서 진행되는 학술대회 중 이사회에서 선정한 학술대회로 한다.

제 4조(지원자의 자격)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 중 타 기관으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다.

1. 대상 학회의 심포지움/특강의 좌장/연자/지정 토론자
2. 구연 혹은 포스터의 경우 연제 당 발표자와 공동저자 1인

제 5조(지원신청)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신청서(학회양식참조)
2. 초록(지원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발표자는 밑줄을 추가)
3. 초록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메일 등)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초청장 등)

제 6조(참가지원 대상자 선정)

제 1항(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는 이사장 및 해당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항(선정기준)

선정위원회에서는 본 학회에의 기여도 및 연구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신청자가 초과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초록 1편당 1인을 우선적으로 지원
2. 최근 1년 간 대한소화기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 수혜 여부
 - 선정 후 비참석자는 가산점 부여 불가
 - 심포지움/특강 연자 및 좌장은 가산점 부여 가능
3. 대한소화기학회 및 연관학회 임원 및 위원

4. 최근 3년 간 춘계연수강좌 및 추계 소화기연관학회 합동학술대회 참석 및 연제 발표 건수
- 최근 3년 간 상기 학회 참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5. 최근 3년 간 대한소화기학회지 및 연관학회 학회지(의편협 인정)에 논문 게재 건수
6. 학회 기여도가 높거나 본 학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7. 구연 발표자 우선 선정
8. 전임의의 경우 소정의 인원을 별도 선정 가능
9. 평가점수 합산에서 동점인 경우 졸업년도, 직급 순으로 상위자 우선
10. 선정된 이후 동일 초록의 다른 저자로 지원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제 7조(지원 범위)

상한액 내에서 등록비, 항공료, 숙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교통비, 식비 등은 상한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상한액을 차등 설정하며, 구체적인 상한액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조(수혜자 의무)

제 1항(품위 유지)

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대한소화기학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 2항(정산 서류)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15일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할 수 있다.

1. 해외 학술대회 참가결과 보고서(학회양식참조)
2. 항공 탑승권 및 영수증
3. 학회등록비, 숙박비, 교통비 및 식사비 등의 영수증 원본

제 3항(수수료)

학회는 지원금에서 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 9조(지원 예산)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회 자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단, Asian Pacific Digestive Week의 council member의 경우 학회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10조(부칙)

제 1항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항 :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